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의자 : 이성권 · 우재준 · 박상웅  
김용태 · 정연욱 · 안철수  
이현승 · 강명구 · 조은희  
이인선 · 이만희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협,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,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,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또한,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.

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,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,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· 제3항, 제

10조제1항 및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67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<u>2029년 12월 31일</u>까지 면제한다.</p> <p>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<u>2029년 12월 31일</u>까지 각각 면제한다.</p> <p>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응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</p>	<p>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--</p> <p>-----.</p> <p>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응자 관련 감면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

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